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의 지식정보화, 소프트화가 진전됨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에서 하도급형태의 수직적 · 계층적 분업구조의 위탁거래가 증가하고, 용역분야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하여 서비스산업에서 대 · 중소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04. 9. 22.부터 입법예고 하였다.

동 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용역위탁분야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규정을 보완하고, "용역위탁"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였다.

둘째,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부당감액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원사업자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였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 의존도 심화 등으로 하도급대금에 관한 교섭력(Bargaining Power)이 매우 낮고, 거래중단의 우려 때문에 납품단가 인하 압력에도 적절히 대응하기 곤란하며, 현행법에서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다양한 납품단가 인하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부당감액행위 유형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건설하도급 계약을 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으면서도 보증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자신의 지급보증은 기피하므로,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하도급법 개정안 신 · 구조문 대비표는 본지 부록(95면 이하)을 참조하기 바람.

2004. 9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공정위는 2004년 9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2004년 10. 1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4년 9월중 17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4. 9. 1. 311개에서 2004. 10. 1. 현재 312개로 1개사가 증가하고,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34개 상호출자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4. 9. 1. 604개에서 2004. 10. 1. 현재 595개로 9개사가 감소하여, 공정거래법상 5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수는 2004. 9월중 5개사가 신규 편입되고, 13개사가 계열제외 됨으로써 2004. 10. 1. 현재 전월대비 8개사가 감소하였다.

[2004. 9월중 계열사 변동 개요]

기업집단	2004. 9. 1	편 입				제 외						증감	2004. 10. 1.
		회사 설립	주식 취득	기타	계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친족 분리	기타	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17개)	311	-	2	-	2	-	-	1	-	-	1	1	312
상호출자 · 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51개)[1]	915	1	4	-	5	1	2	2	8	-	13	△8	907

주 1) 17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포함

[2004. 9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5개사(주식취득 : 4, 회사설립 : 1)

◈ 제외 : 13개사(합병 : 1, 지분매각 : 2, 청산종결 : 2, 친족분리 : 8)

기업집단	편입			제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엘지전선	(주)코스페이스	위성통신방송 관련기기부품업	주식취득	-	-	-
	(주)카보닉스	전기용 탄소제품제조업	주식취득			
씨제이	돈돈팜(주)	농축산업 출하서비스업	회사설립	(주)예전미디어	음반제작 및 도소매업	지분매각
대우조선해양	(주)디섹(구.대동기술주식회사)	선박건조, 개조 및 수리의 검사	주식취득	(주)디섹	선박건조, 개조 및 수리의 검사	합병
하나로통신	하나로드림(주)	부가통신사업	주식취득	-	-	-
에스케이	-	-	-	더컨텐츠컴퍼니(주)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청산종결
세아	-	-	-	선진파이낸스(주)	매출채권의 양수 및 관리	청산종결
				하나로드림(주)	부가통신사업	지분매각
				(주)호텔그린파크	관광사업	친족분리
				(주)메트로알이디	〃	〃
				(주)메트로호텔	〃	〃
				(주)세가	건물관리업	〃
				모아스틸(주)	기타철강산업	〃
				로얄관광개발(주)	기타관광숙박시설	〃
				세풍개발(주)	〃	〃
				누비스타(주)	경영상담업	〃